

NEWS LETTER

2025-02-28

Legal Issue

- 재정거래 대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 특허권 공동 출원인 일부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성
-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

MINWHO News

- 법무법인 민후, 등기 업무 개시
(리걸테크 업체 ZUZU와 협약 체결)
- 양진영 변호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제작 영상 콘텐츠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출연
- 법무법인 민후, 주식회사 텍스티넘과 MOU 체결

Business CASE

 **법무법인민후**



Legal Issue

재정거래 대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김경환 대표변호사

2020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작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①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위 ① 및 ②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⑥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열거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시행령 제1조의 2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그간 그 범위에 관해 명확한 대법원 해석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4도10710 판결을 통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참고로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그대로 대부분 끌어다 오면서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정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해석 문제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사안은 재정거래 사안으로서, 이러한 재정거래는 직접 재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재정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도 있다. 피고인은 특정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특정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정거래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재정거래 대행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합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기준에 의하여 보건대 재정거래 대행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금융정보분석원은 2021년 2월 17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위 대법원 사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으로 설명한 바 있다.

대법원의 위 해석은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상 업으로 가상자산 업무를 하는 경우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바, 이번 대법원 판례 기준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업모델을 점검하는 노력을 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특허권 공동 출원인 일부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성

원준성 대표변호사

특허법 제193조 제3항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이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고유필수적 공동심판). 특허권을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A 단독으로 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심판에 대한 것이고 심결 취소소송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심결 취소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 A와 B가 함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심판에 대한 불복으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와 B가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A 혼자 청구할 수 있는지의 논의이다.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특허권에 갖는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무효심판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심판 단계에서 피신청인 지위의 특허권자 A와 B는 좋은 당사자로서 모두 심판에 관여해야 하나, 그 불복의 성격인 무효심결 취소소송은 특허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만이 선택적으로 진행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심결 취소소송을 특허권자 모두가 반드시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보면, 그 특허권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공유자 B가 소송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이를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자 A까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A 혼자서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심결 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해 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한다.(특허법 제189조제2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특허법 제186조제8항)

● 권리자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 를 구할 수 있나?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에 대한 논의는 주로 특허권 공동소유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와 결부되어 논해져 왔다. 특허권의 공동소유를 민법상 합유 혹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 역시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공유 혹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식이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이후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고 판시하여, 공유설로 그 입장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이해되어 왔다.

공유설에 따라 대법원은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더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따라서 A는 단독으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심결 취소’ 소송

그런데 그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었다 (특허법원 판례로는 2016허4160 등). 이에 대해서는 비단 공동소유의 성격이 합유이나 공유이나 뿐만 아니라 심결 취소소송의 성격이 당사자계인 특허권 공유의 경우와는 다른 결정계라는 점을 근거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여 대법원 태도의 확인이 필요하였다.

이번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은 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는 심판청구인인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더라도 그 권리를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 경우에 역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원준성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3
wonjs@minwho.kr

Legal Issue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

양진영 대표변호사

일반 사람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파워풀한 능력은 어마어마한 학습데이터의 습득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습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클로드(Claude),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미드저니(Midjourney) 유명 인공지능 빅테크 회사대부분은 현재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려있는 상황이다.

사람이라면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학습하겠지만, 인공지능(AI)의 경우 학습 시 전자화되어 있는 파일의 복제 및 전송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더욱이 학습데이터의 수집은 개별 보통 대량으로 일어나며, 이때 크롤링(Crawling) 기법이 활용된다. 크롤링 대상이 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으며,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전송이 일어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 전송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제93조).

이처럼 저작권법 상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전송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다 보니,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도 공존한다. 이에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전송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하자는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공정이용의 일반규정에 해당하는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종료 및 용도, ③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사용을 위한 복제 전송은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로 보인다.

이에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조항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TDM이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대량의 저작물을 수집 및 해석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전송 등을 허용하고 저작권법 침해행위의 예외로서 면책하는 조항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여러차례 TDM 도입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으며,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에서 TDM 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국내 저작권법 상 TDM 면책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AI 학습데이터 사용을 위한 복제·전송은 저작권법 위반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저작물을 학습데이터에 활용하였다면, 저작권자는 형사고소,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작물에 대한 사용금지청구, 폐기청구 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법적조치를 해서 저작권침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학습데이터로 도용된 저작물이 무엇이며, 그 저작물을 제3자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복제, 전송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명 이미지 회사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2023. 1.경 초거대 AI 회사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 자사의 이미지를 동의없이 무단 학습하였다면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게티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운영하는 생성 AI 툴인 스테빌리티 AI에서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위 사건은 학습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학습데이터로 도용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생성AI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는 쉽지 않다.

위 사건과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들이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미드저니(Midjourney), 데비안 아트(Devian Art)이 자신들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데이터에 활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Anderson, McKernan, Ortiz v. Stability AI, DeviantArt, MidJourney 사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생성 AI를 통해 산출된 이미지만으로 원저작자들의 작품이 사용되었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저작권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성AI를 통해 산출된 이미지가 원본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 유사성의 입증만으로 학습데이터의 도용을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AI사에게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작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웹서비스(AWS) 등이 속한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인공 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서,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1. 10. AI 학습 활용 데이터 목록공개 의무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AI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문제는 신기술 발전과 법적 규제 사이에서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TDM 예외조항,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등 새로운 법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법무법인 민후, 등기 업무 개시 (리걸테크 업체 ZUZU와 협약 체결)

법무법인 민후, 리걸테크 업체 ZUZU와 등기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민후는 리걸테크 업체인 ZUZU와 협약하여 고객을 위한 상업등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 관련 설립·변경·상호·지점·해산 및 청산·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전환 등기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업무 고객이 법률자문·소송 의뢰 시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5~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할뿐 아니라,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법인 인감카드·법인 인감도장 등 무료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규 등기업무 제공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법무·법률자문·기업소송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종합적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증대해나갈 예정입니다.

MINWHO NEWS

양진영 변호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제작 영상 콘텐츠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출연



▶ 사진출처 :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양진영 변호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제작 영상 콘텐츠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출연

양진영 변호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작한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여 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②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③ 인공지능을 제품 생산에 도입한 기업의 오류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④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인공지능 도입 관련 법률적·윤리적 쟁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1편 영상 바로가기](#)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2편 영상 바로가기](#)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주식회사 택스티넘과 MOU 체결



법무법인 민후, 주식회사 택스티넘과 MOU 체결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 플랫폼인 '환급나라'를 구축한 (주)택스티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공식 법률자문사로 활동하며 법률-세무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기업을 포함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업무사례

1.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308억원 과징금 등 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 전자화폐(넛넬러페이) 또는 테더를 이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5,000억 원대 금액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청구 기각을 도출
3.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 기각 결과 도출해 승소
4. 프랜차이즈 매장의 법인화 및 운영에 참여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극심한 생활 고에 시달리게 된 원고를 대리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 제기해 인용되는 결과 도출 승소
5.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 대리해 불구속 구공판 결과 도출
6.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리해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금액 과다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지급판결 도출해 승소
7.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IT 서비스 기업의 하수급회사가 타사에 흡수합병된 상황과 관련해, 원수급업체 인 IT 서비스기업에 하도급계약의 조정 및 법률 적합성 검토 자문
8. 핀테크 기업의 마일리지 교환 및 출금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9. 소비자 유통업체의 제품 구매 계약서의 법령 적합성 검토 등 법률자문
10. 수소 연료전지 벤처기업의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내규정 및 계약 서식 수정 등 내부 운영체계 재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